

의안번호	2204279
의 퇴 인	이성윤의원
회 답 일	2024.12.23.
추 계 번호	24D40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및 파기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을 통지받은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000만원, 2030년 3,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억 5,500만원 (연평균 3,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파기 통지(안 제 13조의3 제1항 및 제7항)	30	30	31	32	32	155	31

주: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3(당사자의 권리보호)제1항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허가를 발부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절차) 제5항 및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제공 절차 등)제3항	검사·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 기관에 비치하도록 함	의무규정
3	안 제 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제공의 통지)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주요내용, 사용목적, 요청사유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의 통지)제7항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당사자의 권리보호 또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파기하고, 파기사실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을 통지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의3(당사자의 권리보호) 제1항	×	미첨부 3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절차나 방법, 심사건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 ¹⁾
2	안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절차)제5항 및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절차 등)제3항	—	미대상: 기존 인력과 예산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 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의 통지)제1항	○	—
4	안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의 통지)제7항 신설	○	—

1) 참고로, 사법연감 기준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허가 관련 통계를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허가 통계: 2019~2023년

(단위: 건)

	2019	2020	2021	2022	2023
청구건수	68	10	4	8	20
발부	60	9	3	7	6
일부기각/기각	8	1	1	1	14

자료: 대법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통지(안 제13조의3제1항)

- 개정안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주요 내용, 사용목적, 요청사유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문자메시지에 한정하여 추계함
 -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정보는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등으로, 글자 수가 40자 이내로 제한되는 단문 문자메시지(SMS)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장문 문자메시지(LMS)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 문자메시지 통지 대상자는 최근 4년간 통신사업자가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화번호수의 평균값으로 추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함

[표 2] 최근 4년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전화번호수 기준)

(단위: 건)

	2020	2021	2022	2023	평 균
검찰	128,372	89,231	109,978	133,094	115,169
경찰	323,033	348,414	383,789	375,083	357,580
합 계	451,405	437,645	493,767	508,177	472,74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10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 문자메시지 단가는 46원³⁾으로 추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표 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문자메시지 통지 비용: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통지 대상(a, 명)	472,749	472,749	472,749	472,749	472,749	—
문자메시지 단가(b, 원)	47	48	49	51	52	—
합 계(axb, 백만원)	23	23	24	24	25	1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파기 통지(안 제13조의3제7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파기사실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을 통지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통지방법과 동일하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파기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므로 단문 문자메시지(SMS)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 문자메시지 통지 대상자는 최근 4년간 통신사업자가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화번호수의 평균값([표2])의 90%⁴⁾인 425,474명으로 추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함
- 문자메시지 단가는 16원⁵⁾으로 추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표 4] 통신사실확인자료 파기 문자메시지 통지 비용: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통지 대상(a, 명)	425,474	425,474	425,474	425,474	425,474	—
문자메시지 단가(b, 원)	17	17	17	18	18	—
합 계(axb, 백만원)	7	7	7	8	8	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업체별 장문 문자메시지(LMS) 단가 평균

4) 개정안은 당사자의 권리보호 또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소제기를 등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파기하지 않는 비율을 10%로 가정함

5)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업체별 단문 문자메시지(SMS) 단가 평균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및 파기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을 통지받은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000만원, 2030년 3,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문자메시지 통지 비용: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	23	23	24	24	25	118
통신사실확인자료 파기 통지	7	7	7	8	8	37
합 계	30	30	31	32	32	155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